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안교육기관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26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	2
2.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비 지원	8
3.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지도·감독 등	11
※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및 규칙 현황	15
2. 대안교육기관 지원 현황	1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0. 31.

다. 회 부 일 : 2024. 11.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운영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임.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 등의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0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안 제3조의2 신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제정됨.

“대안교육기관”¹⁾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2)에 따른 교육감의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³⁾와는 달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⁴⁾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24.10. 기준 259개소가 등록되어 있음.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4	9	7	7	12	11	2	1	6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	6	9	7	11	11	7	8	259

자료: 교육부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와 달리 비인가 상태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교육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생태·인성·예술 교육 등에서 더욱 유연하고 독립적인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비교 ＞

구분		대안학교(각종학교)	대안교육기관
개 요	목적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 실시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현황	52개교 (‘24. 6.)	259개 등록 (‘24. 10.)
운 영	학력인정	학력 인정	학력 미인정
	모집단위	지역/전국단위	자율
	학생선발	학칙으로 규정	자율
	교육과정	학칙으로 편성 (국어, 사회 교과는 교육과정 상 수업시수 50% 이상)	자율
재 정	재정지원	재정결함보조, 목적사업비 등 시도별 상이	별도 규정 없음
	수업료	자율로 정함	운영위 심의
인가, 지정 등		교육감 인가	교육감 등록

자료: 교육부

한편,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에 따르면⁵⁾,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피해를

5)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②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한국학교가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각종학교에 해당하여 학교안전공제의 가입 대상이 되고⁶⁾,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육기관으로 그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2020년 3월부터 대안교육기관도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⁷⁾, 2024년 9월 기준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대상 기관 235개 중 148개 기관이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하여 가입률은 63%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6)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교육부 보도자료, 「이젠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안전사고 공제보상 혜택」, 2020.3.3.

< 학교안전공제와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비교 >

구분	학교안전공제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목적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행하는 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사업자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가입자 (의무여부)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 (의무가입)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임의가입)
피 공 제 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수련시설 장의 관리감독하에 수련활동을 하는 자
공제료 (24년)	유(3,600원), 초(4,700원), 중(11,300원), 고(16,100원)	학생 1인당 10,260원
보장 범위	교육활동 중 신체 상해 및 특정 질병* * 일사병, 이물질 섭취 및 접촉, 외상으로 인한 질병 등	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물 피해 및 피공제자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보상 한도	사고당 한도는 없음 (사망 시 최대 2억 원 지급)	대인사고 1사고 당 10억 원 등
가입 현황 (23년)	20,539개교(5,769,597명)	213개 기관(12,365명)

자료: 교육부

이에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게 하여 대안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원 등을 학교안전사고 피해로부터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공제사업 가입에 필요한 경비를 안 제10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가정

할 때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억 6,000만원(연평균 1억 1,2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

(단위: 원,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공제보험료(A, 원)	10,475	10,685	10,899	11,117	11,339	-	10,903
학생수(B, 명)	11,371	11,371	11,371	11,371	11,371	-	11,371
추가재정소요(C=A×B 백만원)	60	121	124	126	129	560	112

주: 2025년의 경우 6개월분의 경비만을 산정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의견 >

○ 교육부: 이견없음

- 공제사업 가입 등 안전과 관련한 조치는 대안교육기관 소속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관의 책무로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이견없음

- 대안교육기관 교장, 이사진, 교사, 학부모 등 3,3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찬성하였음.

○ 대안교육연대: 신중검토

- 개정안에 따라 공제 이외의 민영보험에 가입할 경우, 상품의 종류(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실손보험 등), 보상범위(가입금액)를 교육감이 통제할 수 없어 부실계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변동상황도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에 맡기게 되어 의무가입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 자체가 무의미해짐.
- 청소년활동안전공제(수련시설) 약관에 따르면 공제 계약은 공제 가입자의 '청약'과 중앙회의 '승낙'으로 성립하는데, 개정안에는 공제 가입자인 대안교육기관의 가입 의무만 있을 뿐 공제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제가입자가 가입을 원하더라도 공제사업자가 거절하면 불가피하게 미가입될 수 있고, 공제가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제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공제료를 조정할 수도 있음.

2.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비 지원(안 제10조의2 신설)

개정안은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같은 법 제3조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⁹⁾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에 직접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규칙¹⁰⁾¹¹⁾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급식, 교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음¹²⁾.

개정안은 시·도교육감과 지자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안교육기관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10) (예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이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2.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지원
3.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4.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사업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1)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및 규칙 현황’ 참조.

12) 참고자료 2 ‘대안교육기관 지원현황’ 참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여 교육 소외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대안교육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의견 >

○ 교육부: 이견없음 - 그동안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진해왔으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지자체의 경비 지원 근거가 명시되면 더욱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라남도청: 일부수정 -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교육경비의 지원은 교육감 사무이므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지원에서 ‘지자체 장’은 제외하고 ‘교육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이견없음 - 대안교육기관 교장, 이사진, 교사, 학부모 등 3,3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찬성하였음.
○ 대안교육연대: 일부수정 -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경우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할 수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대안교육기관과 재학생 수 등 지역별 특성이 고려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지도·감독(안 제20조의2 신설)

개정안은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행정조사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2(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소속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 경비에 대하여 관리·집행 등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0조¹³⁾는 대안교육기관이 시설·설비 등 관계 법령 또는 자체 학칙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법령상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명시적인 지도·감독 권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 요구 및 조사 권한이 없어, 대안교육기관 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여부, 안전 관리 실태, 재정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명시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 요구권과 행정조사 권한을 포함하도록 함.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되는 예산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지도·감독의 강화로 인해 대안교육기관이 자발적으로 운영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이 기대됨.

참고로, 평생교육법에서도 유사한 내용과 구조로 지도·감독 및 자료 요구·제출, 행정 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1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0조(시정명령)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시설·설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42조의2(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¹⁴⁾에 따라, 과도한 지도·감독으로 인해 대안교육기관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의견 >

○ 교육부: 이견없음

- 대안교육기관 소속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청이 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기관의 투명성·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경비 집행 현황 등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이 필수적임.
- 지도·감독 권한 행사를 위한 자료 제출요구, 시설 출입 등 검사 권한이 필요.

○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이견없음

- 대안교육기관 교장, 이사진, 교사, 학부모 등 3,3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찬성하였음.

1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대안교육연대: 일부수정**

- 개정안에 이미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하므로 시설·설비 장부 등의 검사권을 조례에 위임하는 것은 불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84

참고 1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및 규칙 현황

조례 및 규칙	시행일자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4. 5. 16.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2021. 7. 14.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1. 3.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7. 7.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3. 3. 15.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3. 11. 1.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4. 7. 1.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3. 3. 20.
김포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2021. 11. 8.
담양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9. 25.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1. 13.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2019. 8.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4. 15.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4. 13.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3. 1. 12.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	2024. 10.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1. 12. 10.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3. 31.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	2020. 2. 22.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2019. 9. 23.
양평군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2020. 6. 22.
여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12. 30.
영덕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0. 10. 23.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3. 8. 10.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3. 5. 18.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10. 12.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4. 1. 1.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	2023. 1. 2.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4. 3. 25.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12. 2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4. 1. 18.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3. 12. 26.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2021. 9. 24.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2

대안교육기관 지원현황

(’24.8월 기준)

시도	시·도교육청		일반 지자체	
	예산(천원)	내용	예산(천원)	내용
서울	7,095,318	프로그램운영비, 강사비, 교직원인건비, 급식비	—	
부산	180,000	프로그램운영비, 강사비	383,520	급식비
대구	86,590	프로그램운영비, 강사비	—	
인천	340,300	프로그램운영비, 강사비, 급식비	—	
광주	1,290,520	프로그램운영비, 강사비, 급식비	—	
대전	27,000	프로그램운영비	90,000	급식비
울산	37,832	프로그램운영비, 강사비, 급식비	—	
세종	4,000	프로그램운영비, 급식비	—	
경기	580,400	프로그램운영비, 강사비	9,785,916	급식비, 교복비, 프로그램운영비
강원	48,993	프로그램운영비	257,000	급식비, 프로그램운영비
충북	149,412	프로그램운영비	74,412	급식비
충남	—		435,453	급식비
전북	135,000	프로그램운영비, 강사비, 교재비	112,500	급식비
전남	386,000	프로그램운영비, 강사비	966,000	급식비
경북	85,000	프로그램운영비, 강사비	—	
경남	18,000	프로그램운영비, 강사비	15,110	급식비
제주	171,521	프로그램운영비, 강사비, 교재비	184,798	친환경 급식비
합계	10,635,886		12,304,709	

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자료: 교육부